



통신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시행 2025. 3. 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2호, 2025. 3. 5., 제정]

[시행 2025. 3.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8호, 2025. 3. 5., 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법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02-2100-3174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경쟁정책과), 044-202-664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제1항 내지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통신 분야의 전송 요구 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송 요구 대상 정보) 영 제42조의4제1항제2호에서 "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5-2호,2025.3.5.>

이 고시는 2025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송 요구 대상 정보(제2조 관련)

[별표]

전송 요구 대상 정보(제2조 관련)

정보항목	세부항목	대상 범위
고객정보	계약관리번호, 가입번호, 통신구분, 가입구분	전송 요구 시점
가입정보	서비스요금제명	전송 요구 시점
이용정보	서비스이용연월, 서비스음성이용량, 서비스문자이용량, 서비스데이터이용량	전송 요구 시점으로부터 1년
청구정보	청구연월, 청구금액, 납부예정일자	전송 요구 시점으로부터 1년
납부정보	납부연월, 납부금액, 납부수단	전송 요구 시점으로부터 1년

※ 영 제42조의4제3항에 따라 위 정보항목 중 청구정보 및 납부정보는 일반
전문기관으로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다.